

순천대학교 정보전산원규정

제정 1986. 6. 17.

개정 1989. 7. 18.

개정 2017. 2. 23.

개정 2019. 10. 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순천대학교정보전산원(이하 "전산원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전산원은 다음 사업을 관장한다.

1. 학생 및 교직원의 전산 교육 및 실습 지원 (개정 2019. 10. 8.)
2. (삭제 2019. 10. 8.)
3. (삭제 2019. 10. 8.)
4. (삭제 2019. 10. 8.)
5. 교육·연구 정보화 지원 및 정보과학 연구·개발 (신설 2019. 10. 8.)
6. 학사 및 행정업무의 정보화 (신설 2019. 10. 8.)
7. 전산망 등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및 운용 (신설 2019. 10. 8.)
8. 정보처리장비의 확보 및 운영 (신설 2019. 10. 8.)
9. 대학 정보 자원 이용 지원 (신설 2019. 10. 8.)
10. 지역사회 정보화 교육 지원 (신설 2019. 10. 8.)
11. 기타 이 대학교 내의 모든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전산원에 전산원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을 두며, 원장은 이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9. 10. 8.)

② 전산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실장과 직원을 둔다. (개정 2019. 10. 8.)

③ 전산원에는 정보기획팀·연구개발팀·시스템운영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19. 10. 8.)

1. 정보기획팀은 대학 정보화계획수립 및 추진, 교육실습시설관리, 대학 홈페이지 및 포털, 전산원 제반 행정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9. 10. 8.)
2. 연구개발팀은 학사·연구·행정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, 학사정보시스템·모바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,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관장한다. (개정 2019. 10. 8.)
3. 시스템운영팀은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도입·개선, 전산망 운영관리, 정보보안, 학내 사무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 (개정 2019. 10. 8.)

제4조(임직원) (삭제 2019. 10. 8.)

제5조(임직원의 임명) (삭제 2019. 10. 8.)

제6조(직무) (삭제 2019. 10. 8.)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전산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·사무국장 외에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(신설 2019. 10. 8.)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산원 운영의 기본계획
2. 규정의 개폐
3. 예산 및 결산
4. 기타 전산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년초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재정) ① 전산원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대학회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 기타 수입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7. 2. 23.)

② 원장은 외부에서 전산원의 기자재를 이용하는 경우 소정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. (신설 2019. 10. 8.)

제11조(수당) (삭제 2019. 10. 8.)

제12조(운영세칙) 전산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7. 2. 2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0. 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